규제영향분석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목 차>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방법 개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신영희
	담당부서(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직급	식품위생사무관
	국장	윤형주		연락처	043-719-2187
	과장	좌정호		이메일	yhminerva@korea.kr

식 품 안 전 정 책 국 장　　윤 형 주 (서 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5">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식품위생법 제11조의2('15.5.18. 개정·공포, '17.5.19 시행)</td></tr>
<tr><td>4.유형</td><td>강화</td><td>5.입법예고</td><td>2017.10.</td></tr>
<tr><td>6.검증단계</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세부 기준 및 방법 개정 필요</td></tr>
<tr><td>8.규제내용</td><td colspan="3">○ 포장지 면적이 50cm^{2}로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면적이 큰 경우는 그래프 형태로 표시</td></tr>
<tr><td>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피규제집단 : 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제조업체
○ 이해관계자 :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 협회 등</td></tr>
<tr><td>10.기대효과</td><td colspan="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및 나트륨 섭취 저감화 유도</td></tr>
<tr><td rowspan="3">규제의 적정성</td><td>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 colspan="3">○ 기존에 나트륨함량비교표시시 QR코드를 이용하던 업체의 경우, 표시면적에 따라 표시 방법을 교체할 경우 동판제작 및 교체 비용이 192백만원 발생하게 됨
○ 원산지 표시, 친환경 인증 등 다른 법 개정과 함께 동판제작을 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 가능함
○ 라면, 국수, 냉면 등 나트륨 주요 급원식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나트륨 섭취량 감소에 0.01%만 기여하여도 15.7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약 1.9억원의 비용은 미미한 수준임
* 201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400mg으로 저감 시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15조7천억~35조1천억원 예상('15,한국보건산업진흥원)</td></tr>
<tr><td>12.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r>
<tr><td></td><td>X</td><td>X</td><td>X</td></tr>
<tr><td rowspan="2">기타</td><td>13.일몰설정 여부</td><td colspan="3">○ 해당없음</td></tr>
<tr><td>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여부</td><td colspan="3">○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고 QR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정방식(네거티브규제)을 적용</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871mg('15)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고량(2,000mg) 보다 약 2배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고혈압 유병률 감소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식품 간 나트륨 함량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소비자 선택 유도

* 현 영양표시는 비교 통한 식품선택에 편리하지 않다(57.1%), 이유는 나트륨 함량 찾기 어려움(75.4%), 각각 확인 필요(13.9%)('15 소비자인식조사, 식약처)

○ 우리 국민의 나트륨 함량 섭취를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 색상과 모양을 활용하여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였음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세부 방법으로 그래프 형태와 QR 코드(휴대폰으로 스캔하여 나트륨 함량을 알 수 있음) 형태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 표시 방식은 그래프 형태 방식에 비해 직관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소비자에게 익숙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세부 비교 표시 방법 >

그래프 형태		QR 코드 형태
[도 1] 예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0 25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도 2] 예시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0 25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도 3] 예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실제 표시대상 식품 중 면류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QR 코드로 표시하고 있어 당초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모든 제품에 QR 코드 형태 표시 허용
	내용	모든 제품에 대해 면적과 관계 없이 그래프 형태와 QR 코드 형태 중 선택 표시
규제대안1	대안명	모든 제품에 QR 코드 표시 불가
	내용	모든 제품에 대해 QR 코드는 허용하지 않고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영양표시에 관한 영업자의 자율성이 보장 ·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 소비자가 식품과 관련된 나트륨 함량 비교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음
규제대안1	· 소비자가 모든 제품에 대해 직관적으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부 제품 특성상 포장지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 유통기한, 소비자 주의 문구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 된 사항들에 대해 가독성이 떨어져 식품에 대한 표시 의미가 적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3. 규제의 목표

○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 도입('15.5) 목적인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맞게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 나트륨 주요 급원식품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소비자에게 나트륨 함량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법률 도입 취지와 제품 포장지 크기 등의 현실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부담으로 규제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X	X	X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동 개정안은 식품의 나트륨 표시방법, 표시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도입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규제 개정의 목적이 뚜렷함

- **경쟁영향평가**

• 면류 등 대상 식품에 대하여 다른 식품에는 없는 규제가 추가되나, 매출경쟁은 동일한 식품유형과 세부분류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쟁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중기영향평가**

•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차별이 없음

•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표시함으로 중소기업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본 개정사항은 종전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이미 많은 업체에서 영양표시 중 일부로 나트륨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유인적 요소가 미미하므로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요소는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주요 국가들은 영양표시를 국민 보건정책의 수단으로 전 가공식품에 의무화하는 등 영양표시 중의 나트륨 표시를 확대하는 추세임
- 따라서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합리한 규제라고 볼 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일몰 설정이 곤란함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영양성분의 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기존 영양성분의 표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소비자가 서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4.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포장지 인쇄를 위한 동판 교체 비용 약 192백만원
비용	< 규제비용추정 > ⇒ 약 192백만원 = 1,920 품목 x 10만원 x 교체횟수 1회 ○ 규제에 따른 비교표시 대상 식품 품목 수 : 1,920여품목 - 국수(조미식품 포함, 800), 냉면(조미식품 포함, 120),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 400),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467), 샌드위치(790) * 출처 : '15년 생산실적보고자료 - 표시면적에 따른 QR 코드 사용 가능한 품목 및 현재 그래프형 표시 품목 추산 : 600여품목 *원산지 표시, 친환경 인증 등 다른 법 개정과 함께 동판제작을 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 가능하며, 기존포장지 소진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함
세분류	대상 식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
활동제목	포장지 인쇄를 위한 동판 교체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192,000,00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정성)제목	나트륨 주요 급원식품의 비교 선택 도움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
분석	•라면, 국수, 냉면 등 나트륨 주요 급원식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나트륨 섭취량 감소에 0.01%만 기여하여도 향후 10년간 15.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400mg으로 저감 시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15조7천억~35조1천억원 예상('15,한국보건산업진흥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짝수년 시행(2020.1.1.)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규제 차등화 방안**

-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제도 적용을 위한 Q&A 제작·배포 등 지원 추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추가업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감시·감독은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력 투입필요가 적다고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나트륨 함량 분석·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투입 없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예정)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영업자 홍보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나트륨의 과잉 섭취 감소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쉽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함

○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은 192백만원으로 추정되며, 나트륨 주요 급원식품의 비교 선택 도움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으로 인한 편익은 15.7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큼

- 광고 및 홍보의 수단으로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 표시로 인한 판매 및 영업수익의 감소 등 업체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 규제비용은 추정된 것보다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됨